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2
----------	------

제출년월일 : 2005년 6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
-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

2.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던 것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함(제17조).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별도의 과세물건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함.

3. 근거법령 : 지방세법(붙임)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첨부: 1. 기타참고자료(준칙안) 2부

2. 입법예고(사본) 2부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하고,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장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으로”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보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2로 한다”를 “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6 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 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 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 산세를 경감한다.</p> <p>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u> 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u> 인 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 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 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 행구역안의</p> <p>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u></p> <p>2. <u>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u></p>
<p>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생 략)</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 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 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 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 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 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 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p>

★도세담당	세정과장				
박문수	전결 04/27 최한섭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05.4.4 ~ 2005.4.25 (21일간)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개정조례안 요목

·준칙안 시달 : 충청북도 세무회계과-4264 (2005.3.9)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 2005 - 219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4.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함.

□ 주요개정내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던 것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함.(제17조)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도세담당	세정과장				
박문수	전결 06/08 최한섭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05. 5. 16. ~ 2005. 6. 7. (21일간)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개정조례안 요목

·준칙안 시달 : 충청북도 세정과-1990 (2005.5.12)

·주요내용 :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별도의 과세물건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함.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 2005 - 324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6.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주요개정내용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별도의 과세물건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함.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근거법령】

지방세법

[법률 제07070호]

第1章 總則

第7條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213호]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1.14. 법률 제733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 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변경·공고 및 지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제작 및 배포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래시장관련 시 군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470(2005.3.9)호의 이첩입니다.

2. 재래시장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입과 같이 시·군세감면조례표준을 통보하니 조례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00 사·군세감면조례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D01-12(세정업무관련과장)

He was a man of great energy and determination, and he left a lasting legacy in the field of education.

四
卷之二

시행 세무회계과-4264 (2005.03.09.) 접수 세정과-2854 (2005.03.10.)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615 / 전송 043) 220-2619 / shlee1@cb21.net / 공개

○○시·군·구 감면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p>제00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2.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0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p> <p>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u></p> <p>2. <u>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u></p>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결유)

제목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시 군세 감면조례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령-843(2005.5.11)호의 이첩입니다.

2.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 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표준안을 통보하니

3.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 항 :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개정안 1부. 규.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템이-12(세정업무관련과장)

현주자

시행 세종과-1990 (2005.05.12.) 적용 세종과-5628 (2005.05.12.)

010-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615 / 전속 043) 220-2619 / kny0325@cb21.net / 광개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안)